

◆ 광촉매시험방법의 JIS 제정

일본 경제산업성은 2004년 1월20일 광촉매에 관한 최초의 JIS로「광촉매의 공기정화시험방법」을 제정했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이번의 JIS제정으로 광촉매의 공기정화성능의 정확한 판정이 가능해 졌으며, 향후 국제규격화 제안을 통하여 국제규격 작업 위원회에 일본이 선도 할 수 있고, 표준을 유효하게 활용하여 일본이 기술경쟁력우위를 기대할 수 있다고 밝혔다.

● 정식명칭

JIS R 1701-1 FINECERAMICS

-광촉매재료의 공기정화성능시험방법-

● 현재까지의 경위

광촉매 시장확대를 도모하기위하여는 JIS, ISO 등 공적 규격이 필요하다는 공통적인 인식하에 산업계, 학회, 공적연구기관등이 일체가 되어 표준화 활동이 시작되어 일본 경제산업성의 지원하에 2002년 9월 30일 (사) 일본 파인세라믹스협회에 광촉매표준화위원회를 두어 JIS원안작성, ISO 국제제안등의 활동을 하고 있다.

광촉매의 대표적인 기능인

- (1) SELF-CLEANING(방오,방진등)
- (2)공기정화(NOx, VOC, 악취 등)
- (3) 수질정화
- (4) 항균, 항곰팡이

의 4 테마에 대하여 성능시험방법의 JIS 원안작성을 완료하였으며 이번에 [(2)공기정화] 에 대하

여 JIS를 제정하였다.

● JIS R 1701-1의 규정내용 및 의의

광촉매재료상에 기지농도의 질소산화물(NOx)혼입공기를 넣어 NOx가 어느정도 제거되는지를 판정하는 시험방법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의해 광촉매재료의 NOx제거성능의 정확한 판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 ① 소비자보호(정확한 성능정보에 의한 상품선택 가능)
- ② MAKER의 기술력 향상(상품성능의 판정이 용이하기 때문에 MAKER는 고성능화를 목표로 기술개발추진)
- ③ 상품의 신뢰성향상에 따른 시장확대
- ④ 환경사회에의 공헌을 기대하고 있다.

◆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관리법 내달 시행

실내공기질관리법은 기존 '지하생활공간 공기질 관리법'을 개정한 것으로, 이 법에 따라 오는 5월 30일부터는 신축되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이나 지하역사 및 지하상가, 의료기관, 학원, 보육 및 노인 복지시설등의 다중이용시설에서는 실내공간 오염 물질을 기준치 이하로 유지해야하며 시공자는 입주 가 이루어지기 전에 실내공기질을 측정하여 그 결과를 입주민들에게 반드시 알려주어야 한다.

1. 개정이유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실내 공기질을 알맞게 유지하고 관리함으로써 국민의 건

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이 법의 적용대상을 확대하고, 다중이용시설의 관리책임자로 하여금 실내공기질관리 교육을 받도록 하며, 다중이용시설에는 인체에 특히 해로운 오염물질을 방출하는 건축자재의 사용을 제한하도록 하며, 새로 짓는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시공자로 하여금 주민이 입주하기 전에 실내공기질을 측정·공고하도록 의무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문제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이 법의 제명을 “지하생활공간공기질관리법”에서 “다중 이용 시설 등의 실내 공기질 관리법”으로 변경함(법 제명).

나. 이 법의 적용대상을 종전의 지하역사 및 지하도상가를 포함하여 일정 규모 이상의 여객터미널·도서관·의료기관 등 다중이용시설과 신축되는 공동주택으로 확대함(법 제3조).

다. 다중이용시설 내부의 쾌적한 공기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반드시 지켜야 하는 유지기준을 정하고, 유지기준과는 별도로 일정 기준에 따르면 권고하는 권고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실내공기질 관리기준을 어휘화하여 시설에 따라 실내공기질이 적정하게 관리되도록 함(법 제5조 및 제6조).

라. 다중이용시설의 관리책임이 있는 자에게 실내공기질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는 의무를 부여함(법 제7조).

마. 신축되는 공동주택의 시공자는 주민이 입주하기 전에 실내 오염물질을 측정하여 그 결과를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고 입주인에게 공고하도록 함(법 제9조).

바. 환경부장관은 특히 인체에 해로운 오염물질을 다량으로 방출하는 건축자재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할 수 있도록 하고, 다중이용시설에는 이와 같은 건축 자재의 사용을 금지하도록 함(법 제11조).

사.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은 실내공기질을 측정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도록 함(법 제12조).

아. 다중이용시설 및 신축 공동주택의 보고·검사 업무는 각각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의 업무로 함(법 제13조)

3. 다중이용시설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률

제 1조(목적) 이 법은 다중이용시설과 신축되는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을 알맞게 유지하고 관리함으로써 그 시설을 이용하는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다중이용시설”이라 함은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시설을 말한다.
2. “공동주택”이라 함은 건축법 제23조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을 말한다.
3. “오염물질”이라 함은 실내공간의 공기오염의 원인이 되는 가스화 떠다니는 입자상물질 등으로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4. “환기설비”라 함은 오염된 실내공기를 밖으로 내보내고 신선한 바깥공기를 실내로 끌어들이어 실내공간의 공기를 쾌적한 상태로 유지시키는 설비를 말한다.

5. “공기정화설비”라 함은 실내공간의 오염물질을 없애거나 줄이는 설비로서 환기설비의 안에 설치되거나, 환기설비와는 따로 설치된 것을 말한다.

제 3조(적용대상)

① 이 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다중이용시설은 다음 각호의 시설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의 것으로 한다.

1. 지하역사(출입통로·대합실·승강장 및 환승통로와 이에 딸린 시설을 포함한다)
2. 지하도상가(지상건물에 딸린 지하층의 시설을 제외한다)
3.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여객자동차 터미널의 대합실
4. 항공법에 의한 공항시설중 여객터미널
5. 항만법에 의한 항만시설중 대합실
6. 도서관및독서진흥법에 의한 도서관
7.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에 의한 박물관 및 미술관
8.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
9. 실내주차장
10. 철도역사의 대합실
11.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② 이 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공동주택은 다음 각호의 공동주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으로 신축되는 것으로 한다.

1. 아파트
2. 연립주택

제 4조(실내공기질 공정시험방법) 환경부장관은 오염물질을 측정할 때 정확하고 통일된 측정을 하도록 하기 위하여 실내공기질 공정시험방법을 정하

여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제 5조(실내공기질 유지기준) ①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 등 관리책임이 있는 자(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는 다중이용시설 내부의 쾌적한 공기질을 유지하기 위한 기준에 맞게 시설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기질 유지기준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③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이하 “시·도”라 한다)는 지역환경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시·도의 조례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기질 유지기준보다 엄격하게 당해시·도에 적용할 공기질 유지기준을 정할 수 있다.

제 6조(실내공기질 권고기준) 환경부장관은 다중이용시설의 특성에 따라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기질 유지기준과는 별도로 쾌적한 공기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환경부령이 정하는 권고기준에 맞게 시설을 관리하도록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에게 권고할 수 있다.

제 7조(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의 교육)

- ①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은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이 실시하는 실내공기질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 ② 환경부장관은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를 교육대상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 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을 내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전문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 8조(공기정화설비 및 환기설비의 설치) 다중이용시설을 설치하는 자는 공기정화설비 및 환경부령

이 정하는 구조 및 설치기준에 따른 환기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9조(신축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관리)

- ① 신축되는 공동주택의 시공자는 시공이 완료된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을 측정하여 그 측정결과를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고, 입주 개시 전에 입주자들이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공고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내공기질의 측정항목·방법, 측정결과의 제출·공고시기·장소 등에 관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 10조(개선명령) 시·도지사는 다중이용시설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그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에게 공기정화설비 또는 환기설비 등의 개선이나 대체 그 밖의 필요한 조치(이하 "개선명령"이라 한다)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 1.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공기질 유지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관리되는 경우
- 2.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공기정화설비 또는 환기설비가 설치되지 아니하거나 그 구조 및 설치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설치된 경우

제 11조(오염물질방출건축자재의 사용제한)

- ① 환경부장관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령이 정하는 오염물질이 많이 나오는 건축자재(이하 "오염물질방출건축자재"라 한다)를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 ② 다중이용시설을 설치(기존 시설의 개수 및 보수를 포함한다)하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이 고시한 오염물질방출건축

자재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 12조(실내공기질의 측정)

- ①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은 실내공기질을 스스로 측정하거나 환경부령이 정하는 자로 하여금 측정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내공기질 측정대상오염물질, 측정횟수 그 밖에 실내공기질의 측정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 13조(보고 및 검사 등)

- 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실내공기질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 또는 신축되는 공동주택의 시공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도록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다중이용시설 또는 신축되는 공동주택에 출입하여 오염물질을 채취하거나 관계서류 및 시설·장비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 ②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오염물질을 채취한 때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검사기관에 오염도검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다만, 현장에서 검사결과를 판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입·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 14조(벌칙)

- ①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공무원의 출입·검사 또는 오염물질 채취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하는 행위를 한 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 15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4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동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제 16조(과태료)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5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공기질 유지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자
2. 제11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오염물질방출 건축자재를 사용한 자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7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실내공기질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
2. 제9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신축되는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측정결과를 제출·공고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제출·공고한 자
3. 제12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실내공기질 측정을 하지 아니한 자 또는 측정결과를 기록·보존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기록하여 보존한 자
4.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한 자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시

장·군수·구청장 (이하 "부과권자"라 한다)이 부과·징수한다.

-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부과권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 ⑤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부과권자는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 ⑥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된 날부터 시행한다.
- ② (기존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은 제8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공기정화설비 및 환기설비를 설치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일로부터 3년의 범위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내에 제8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공기정화설비 또는 환기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 ③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적용례)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제8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주택건설촉

진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건축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④ (과태료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⑤ (다른 법률의 개정) 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6조 제19호머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다중이용시설등의실내공기질관리법

⑥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지하생활공간공기질관리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법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다중이용시설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하위법령안 입법예고

□ 환경부는 2003년 5월29일「지하생활공간공기질관리법」이 「다중이용시설등의실내공기질관리법」으로 개정·공포됨에 따라 동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2003년 12월 31일자로 입법예고 하였다.

□ 동 개정안은 법률의 전면개정에 따른 후속조치와 그간 시행령·시행규칙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적용대상이 되는 다중이용시설의 범위를 모든 지하역사,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인 지하도상가·여객자동차터미널의 대합실·공항시설

중 여객터미널·항만시설 중 대합실·도서관·박물관·미술관·의료기관(병상수 100개이상 포함)·실내주차장(공동주택 부설 제외)·철도역사의 대합실과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인 장례식장·보육시설·노인복지시설, 연면적 3천제곱미터이상인 업무시설,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인 2이상 용도건축물, 객석수 1천석 이상의 공연장,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의 학원·상점가·혼인예식장, 대규모점포, 관람석 1천석 이상의 실내체육시설로 규정하였다.

○ 실내공기질을 항상 유지하여야 하는 오염물질로 미세먼지, 이산화탄소, 포름알데히드, 총부유세균, 일산화탄소 등 5개 오염물질로 정하여 이들 오염물질에 대하여는 유지기준을 설정하였고,

- 이산화질소, 라돈, 총휘발성유기화합물, 석면, 오존 등 5개 오염물질에 대해서는 유지기준은 아니나, 기준을 달성할 것을 권고하는 기준을 설정하였으며,

- 이들 오염물질에 대하여는 연1회 이상 측정하고 그 결과를 매년 1월 31일까지 시·도지사에게 보고하도록 하였다.

○ 다중이용시설의 관리책임자는 임명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실내공기질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도록 하였다.

○ 다중이용시설을 설치하는 자는 일정 기준의 환기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며, 기존의 다중이용시설에 대하여는 3년 이내에 동 기준에 적합한 환기설비를 설치하도록 하였다.

○ 또 포름알데히드, 총휘발성유기화합물을 일정량이상 방출하는 건축자재를 관계부처와 협의

하여 고시하고, 다중이용시설에 사용을금지하였다.

* 포름알데히드: 접촉제(4mg/m²·h), 일반자재(1.25mg/m²·h)

* 총휘발성유기화합물: 접촉제(10mg/m²·h), 일반자재(4mg/m²·h)

○ 이 법 시행 후 사업계획 승인이나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100세대 이상의 신축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주민입주 전에 규모에 따라 3개소 내지 9개소에서 포름알데히드와 총휘발성유기화합물을 측정하여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에 제출하고 주민들이 잘 볼 수 있는 출입문 등에 60일간 공고토록 하였다.

□ 환경부는 이번 입법예고안에 대하여 20일간 각계 의견을 수렴한 후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내년 상반기 중 공포하여 5월30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붙임: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령안

지하생활공간공기질관리법시행령 개정령안(2003. 12)

1. 개정이유

지하생활공간공기질관리법이 전면개정(2003. 5. 29. 법률 제6911호)됨에 따라 동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그 밖에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이 시행령의 제명을 “지하생활공간공기질관리법시행령”에서 “다중이용시설등의실내공기질

관리법시행령”으로변경함(안 제명).

나. 법 제3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다중이용시설의 규모는 모든 지하역사, 연면적 2천제곱미터이상인 지하도상가(여객자동차터미널의 대합실·공항시설중 여객터미널·항만시설중 대합실·도서관·박물관·미술관·의료기관(병상수 100개이상 포함)·실내주차장(공동주택 부설 제외)·철도역사의 대합실로 함(안 제2조제1항).

다. 법 제3조제1항제1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시설로는 연면적 1천제곱미터이상인 장례식장·보육시설·노인복지시설, 연면적 3천제곱미터이상인 업무시설, 연면적 2천제곱미터이상인 2이상 용도 건축물, 객석수 1천석이상의 공연장, 연면적 2천제곱미터이상의 학원·상점가·혼인예식장, 대규모점포, 관람식 1천석이상의 실내체육시설로 함(안 제2조제2항).

라. 법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정하도록 한 공동주택의 규모는 100세대로 함(안 제2조제3항).

마. 다중이용시설 관리책임자에 대한 교육을 환경보전협회 또는 교육을 실시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기관에 위탁함(안 제3조)

다중이용시설등의실내공기질관리법시행령

3. 다중이용시설등의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제1조(목적) 이 영은 다중이용시설등의실내공기질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①다중이용시설등의실내공기

제2조(적용대상) ①다중이용시설등의실내공기
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의 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시설
을 말한다.

1. 모든 지하철역사
2. 연면적 2천제곱미터이상인 지하도상가(연속되
어 있는 2이상의 지하도상가의 연면적 합계가 2
천제곱미터이상인 경우를 포함한다)
3. 연면적 2천제곱미터이상인 여객자동차터미널의
대합실, 공항시설중 여객터미널, 항만시설중 대
합실, 도서관, 박물관 또는 미술관
4. 연면적 2천제곱미터이상이거나 임원 진료 병상
이 100개이상인 의료기관
5. 연면적 2천제곱미터이상인 실내주차장(공동주
택 등에 부속되어 특정인들이 주로 이용하는 실
내주차장은 제외한다)
6. 바닥면적 2천제곱미터이상인 철도역사의 대합실
②법 제3조제1항제11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1. 장사등에관한법률에 의한 장례식장중 연면적 1
천제곱미터이상인 것
2.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시설중 연면적 1천제
곱미터이상인 것
3. 노인복지법에 의한 노인복지시설중 연면적 1천
제곱미터이상인 것
4. 건축법에 의한 업무시설로서 연면적 3천제곱미
터이상인 것
5.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로서 2 이상
의 용도(건축법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용
도를 말한다)에 사용되는 것

6. 공연법에 의한 공연장으로서 객석수 1천석이상
인 것

7.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에 의한
학원으로서 연면적 2천제곱미터이상인 것

8.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하여 개설 등록된 대규모점
포와 동법에 의한 상점가중 지하도에 있는 연면
적 2천제곱미터이상인 것

9. 건설행정의례의정작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혼
인예식장으로서 연면적 2천제곱미터이상인 것

10.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체육
시설로서 관람석 1천석이상인 실내체육시설

③법 제3조제2항에서 "공동주택으로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규모"라 함은 100세대를 말한다.

제3조(권한의 위탁) 환경부장관은 법 제7조제3
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 7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
정에 의한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의 교육에 관한
권한을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환
경보건협회의 장 또는 환경부장관이 교육을 실시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기관의 장에게 위
탁한다.

제4조(과태료의 부과) ①시·도지사 또는 시
장·군수·구청장은 법 제16조 제3항의 규정에 의
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
사·확인한 후 위반사실·이의방법·이의기간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대
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
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10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
분대상자에게 구술·서면 또는 전자문서에 의
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 ③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 ④ 과태료의 징수절차는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 부 칙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4년 5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존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은 이 영 시행일부터 3년이내에 법 제8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기준에 적합한 공기정화설비 및 환기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공중위생관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호중 “지하생활공간공기질관리법”을 “다중이용시설등의실내공기질관리법”으로 한다.

② 환경부와그소속기관직제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7호중 “지하생활공간에 대한 공기질”을 “실내공기질”로 한다.

지하생활공간공기질관리법시행규칙 개정령안(2003. 12)

1. 개정이유

지하생활공간공기질관리법이 전면개정(2003. 5.

29, 법률 제6911호)됨에 따라 동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그 밖에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 가. 이 시행규칙의 제명을 “지하생활공간공기질관리법시행규칙”에서 “다중이용시설등의실내공기질관리법시행규칙”으로 변경함(안 제명).
- 나. 실내공간오염물질로 마세먼지, 이산화탄소, 폼알데히드, 총부유세균, 일산화탄소, 이산화질소, 라돈, 총휘발성유기화합물, 석면, 오존 등 10종을 규정함(안 제2조 및 별표1).
- 다. 다중이용시설별로 실내공기질 유지기준 및 권고기준을 규정함(안 제3조, 제4조, 별표2 및 별표3).
- 라. 다중이용시설 관리책임자에 대한 실내공기질관리에 관한 교육실시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함(안 제5조 내지 제11조).
- 마. 다중이용시설에 설치되는 환기설비의 구조 및 설치기준을 규정함(안 제12조 및 별표4).
- 바. 신축 공동주택의 공기질 측정, 제출, 공고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함(안 제13조).
- 사. 다중이용시설에 사용을 제한하기 위한 오염물질방출건축자재 고시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함(안 제16조 및 별표5).
- 아.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측정기관, 측정대상 오염물질, 측정횟수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함(안 제17조 및 별표6).
- 자. 다중이용시설의 관리책임자는 다중이용시설의

환기설비 현황, 공기질 측정결과 등을 매년 1월 31일까지 시·도지사에게 보고하도록 함(안 제18조)

3. 다중이용시설등의실내공기질관리법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다중이용시설등의실내공기질관리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실내공간오염물질) 다중이용시설등의실내공기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실내공간오염물질의 종류는 별표1과 같다.

제3조(실내공기질 유지기준)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은 별표2와 같다.

제4조(실내공기질 권고기준) 법 제6조의규정에 의한 실내공기질 권고기준은 별표3과 같다.

제5조(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의 교육) ①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은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보전협회 또는 환경부장관이 교육을 실시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기관(이하 "교육기관"이라 한다)에서 실시하는 실내공기질관리에 관한 교육을 교육대상자가 된 날부터 1년이내에 1회 받아야 하며, 법 제14조 또는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벌칙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는 해당 위반행위가 적발된 날부터 1년이내에 1회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기간은 2일 이내로 한다. 다만,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원격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간의 교육을 받아야 한다.

제6조(교육계획) ①교육기관의 장은 매년 11월 30일까지 다음 해의 교육계획을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교육의 기본방향
2. 교육수요조사의 결과 및 교육수요장기전망
3. 교육의 목표·과목·기간 및 인원
4. 교육대상자 선발기준 및 선발계획
5. 교재편찬계획
6. 교육성적의 평가방법
7. 그 밖에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교육대상자의 선발 및 등록) ① 환경부장관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계획을 매년 1월 31일까지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는 관할구역의 교육대상자를 선발하여 그 명단을 당해 교육과정개시 15일전까지 교육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시·도지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대상자를 선발한 때에는 당해 교육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교육대상자로 선발된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은 당해 교육기관에 교육개시전까지 등록을 하여야 한다.

제8조(교육결과보고) 교육기관의 장은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을 실시한 때에는 당해 년도의 교육실적을 다음해 1월 31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지도) 환경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교육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교육실시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련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교육기관의 교육상황·시설 기타 교육에 관계되는 사항에 관한 지도를 할 수 있다.

제10조(자료제출협조)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은

제10조(자료제출협조)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은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의 효과적인 수행을 위하여 시·도지사가 다음 각호의 자료를 요청한 때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1. 교육이수내역
2. 그 밖에 교육에 필요한 자료

제11조(교육경비) 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하는 교육경비는 교육내용 및 교육기간등을 고려하여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2조(환기설비의 설치기준)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하는 환기설비의 구조 및 설치기준은 별표4와 같다.

제13조(신축 공동주택의 공기질 측정) ①법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실내공기질의 측정항목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포름알데히드
2. 총휘발성유기화합물

②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실내공기질의 측정은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실내공기질 공정시험방법에 의하여 다음 각호에 따라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된 자가 한다.

1. 100세대이상 500세대 미만인 경우 3개소 이상
2. 500세대이상 1천세대 미만인 경우 6개소 이상
3. 1천세대 이상인 경우 9개소 이상

③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실내공기질 측정결과의 제출·공고시기·장소 등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신축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측정결과는 아래 사항을 포함하여 주민입주 3일전까지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한다.

- 가. 신축 공동주택 명
- 나. 측정위치
- 다. 측정기간
- 라. 측정기관
- 마. 측정값

2. 신축 공동주택의 측정결과는 주민입주 3일 전부터 60일간 제1호의 내용을 다음 각목의 장소에 주민들이 잘 볼 수 있도록 공고한다.

- 가. 관리사무소 입구 게시판
- 나. 각 공동주택 출입문 게시판

제14조(개선명령기간 등) ①시·도지사는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기정화설비 또는 환기설비등의 개선·대체 기타 필요한 조치(이하 "개선명령"이라 한다)를 명할 때에는 개선에 필요한 기간을 고려하여 1년의 범위내에서 그 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②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선명령을 받은 자는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사유로 인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선기간 이내에 조치를 완료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시·도지사에게 개선기간의 연장을 신청(정보통신망에 의한 신청을 포함한다)할 수 있으며, 신청받은 시·도지사는 1년의 범위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선명령을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시하여

야 한다.

1. 개선명령 사유
2. 개선계획서의 제출
3. 개선기간

제15조(개선계획서의 제출 등) ①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선명령을 받은 자는 그 명령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개선계획서를 시·도지사에게 제출(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1. 개선명령을 받은 사유 및 그 대책
2. 공기정화설비 또는 환기설비를 개선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 명세
3. 개선완료예정일

② 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선계획서를 제출받은 경우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이 명확하지 아니하거나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그 개선계획의 보완을 명할 수 있다.

③ 시·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개선명령이 완료된 때에는 그 명령의 이행상태를 확인하고 실내공기질기준의 적합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16조(오염물질방출건축자재 고시) ① 법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부령이 정하는 오염물질방출건축자재"라 함은 별표5와 같다.

② 오염물질방출건축자재를 고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건축자재 생산업체 및 건축자재명
2. 시험·검사기관
3. 시험·검사방법
4. 측정기간
5. 오염물질 방출량

제17조(실내공기질의 측정) ①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부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환경부장관이 측정능력이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자를 말한다.

② 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실내공기질의 측정대상오염물질, 측정횟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별표6과 같다.

제18조(보고) ①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은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사항을 매년 1월 31일까지 시·도지사에게 보고(정보통신망에 의한 보고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1. 다중이용시설의 현황 및 변경사항
2. 공기정화설비 및 환기설비의 현황과 변경사항
3. 실내공기질 측정결과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는 별지 서식에 의한다.

제19조(오염도검사기관) 법 제12조제2항에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검사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기관을 말한다.

1. 국립환경연구원
2. 특별시·광역시 및 도의 보건환경연구원
3. 유역환경청 및 지방환경청
4. 기타 환경부장관이 검사능력이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자

제20조(과태료의 징수절차) 다중이용시설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시행령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관리법시행규칙을 준용한다.

◆ 부 칙 ◆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4년 5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측정에 대한 경과조치) 2004년도에 실시하여야 하는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측정에 관한 제1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아래 각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이 규칙 시행당시 설치·운영되는 경우는 유지기준 및 권고기준 오염물질 항목을 각각 1회이상 측정한다.
2. 2004년 9월 1일 이전에 설치되는 경우는 유지기준 오염물질 항목만 1회이상 측정한다.
3. 2004년 9월 1일 이후에 설치·운영되는 경우는 2004년도의 실내공기질 측정을 면제한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주차장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7호를 삭제한다.

②공중위생관리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중 “공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 위생관리 기준”을 “공중이용시설의 위생관리 기준”으로 한다.

제8조제2항을 삭제한다.

별표 5 및 별표 6을 각각 삭제한다.

③환경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제7호중 “지하생활공간에 대한 공기질”을 “실내공기질”로 한다.

시행규칙 별표

→→→ [별표 1]

실내공간 오염물질의 종류(제2조관련)

- | | |
|---|---|
|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미세먼지(PM10) 2. 이산화탄소(CO2) 3. 포름알데히드(HCHO) | <ol style="list-style-type: none"> 4. 총부유세균 5. 일산화탄소(CO) 6. 이산화질소(NO2) 7. 라돈(Rn) 8. 총휘발성유기화합물(TVOC) 9. 석면 10. 오존 |
|---|---|

▶▶▶ [별표 2]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제3조관련)

오염물질 항목 다중이용시설	PM10 ($\mu\text{g}/\text{m}^3/8\text{시간}$)	CO ₂ (ppm/2시간)	HCHO (ppm/8시간)	총부유세균 (CFU/ $\text{m}^3/8\text{시간}$)	CO (ppm/2시간)
지하역사, 지하도상가 여객자동차터미널의 대합실, 공항시설중 여객터미널, 항만시설중 대합실, 철도역사의 대합실,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업무시설, 2이상 용도 건축물, 공연장, 대규모점포, 지하상점가, 혼인예식장, 실내체육시설, 장례식장	150이하	1,000 이하	0.10 이하	-	10 이하
의료기관, 보육시설, 노인복지시설, 학원	100이하			800 이하	800 이하
실내주차장	200이하			-	200이하

▶▶▶ [별표 3]

실내공기질 권고기준(제4조관련)

오염물질 항목 다중이용시설	NO ₂ (ppm/2시간)	Rn (pCi/l)	TVOC ($\mu\text{g}/\text{m}^3$)	석면 (개/cc)	오존 (ppm)
지하역사, 지하도상가 여객자동차터미널의 대합실, 공항시설중 여객터미널, 항만시설중 대합실, 철도역사의 대합실,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업무시설, 2이상 용도 건축물, 공연장, 대규모점포, 지하상점가, 혼인예식장, 실내체육시설, 장례식장	0.05이하	4.0 이하	500 이하	0.01 이하	0.06 이하
의료기관, 보육시설, 노인복지시설, 학원	0.05이하		400 이하		0.06 이하
실내주차장	0.30이하		1,000이하		0.08이하

→→→ [별표 4]

환기설비의 구조 및 설치기준(제12조관련)

1. 환기설비는 평상시와 비상시에 효과적으로 다중이용시설 내부의 실내공기질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을 준수할 수 있도록 충분히 외부 공기를 유입하고 내부공기를 배출할 수 있는 용량으로 고장·정비시에 대비할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2. 다중이용시설의 환기설비 용량기준은 내부 연면적당 및 이용인원당으로 계산되며, 이 두 계산값중 높은 값을 당해 다중이용시설의 환기설비 용량으로 한다. 다만, 시·도지사가 항상 실내공기질 기준을 준수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다중이용시설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중이용시설 산정기준	여객자동차터미널의 대합실, 공항시설중 여객터미널, 항만시설중 대합실, 철도역사의 대합실, 실내체육시설	지하역사, 지하도상가,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업무시설, 2이상 용도 건축물, 공연장, 대규모점포, 지하상점가, 혼인예식장, 장례식장	의료기관, 보육시설, 노인복지시설, 학원	실내 주차장
환기횟수(회/h)	0.3이상	0.5이상	0.7이상	3이상
이용인원당 환기량 (m ³ /인·h)	25이상	25이상	25이상	30이상

비고 1. 실내주차장의 경우에는 사용인원은 이용차량으로 본다.

2. 환기횟수는 건물의 실내공기 체적에 대한 시간당 외부로부터 도입되는 공기량의 비율을 말한다.
3. 이용인원당 환기량은 1인이 1시간에 필요로하는 건물의 외부로부터 도입되는 공기량을 말한다.

3. 공기의 흡입구 및 배출구는 빗물 또는 쓰레기 등이 들어오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4. 다중이용시설안에 들어오는 공기의 분포를 균등하게 하여 기류가 부분적으로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5. 외부배출구로부터 배출되는 공기 및 소음으로 인하여 보행자나 인근 건물 등에 피해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6. 공기의 흡입구 및 배출구에 설치하는 송풍기는 외부의 기류로 인하여 송풍능력이 낮아지지 아니한 구조이어야 한다.
7. 환기덕트는 공기를 오염시키지 아니하는 재료로 만들어져야 한다.
8. 공기의 흡입구 및 배출구는 배출되는 공기가 직접 흡입되지 아니하도록 분리하여야 한다.

→→→ [별표 5]

오염물질방출건축자재(제16조제1항관련)

오염물질방출건축자재란 아래 표의 오염물질에 대한 방출농도를 갖는 건축자재를 말한다.

(단위 :mg/m³ · h)

오염물질	구 분	
	접착제	일반자재
포름알데히드	4이상	1.25이상
총휘발성유기화합물	10이상	4이상

- 비고 1. 일반자재란 벽지, 도장재, 바닥재, 목재 및 기타 건축물 내부에 사용되는 건축자재를 말한다.
 2. 오염물질 방출기준이 있는 환경마크, 한국산업규격(KS) 등을 획득한 건축자재에 대하여는 해당 오염물질 측정을 제외할 수 있다.

→→→ [별표 6]

실내공기질의 측정관련(제17조제2항관련)

1.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측정대상오염물질은 유지기준 및 권고기준 오염물질로 한다.
2.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측정은 연 1회 이상 실시한다.
3.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이 실내공기질을 스스로 측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오염물질을 측정할 수 있는 측정장비를 보유하여야 한다.
4. 실내공기질 측정을 다른 자에게 의뢰할 경우에는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고시된 자에게 의뢰하여야 한다.
5. 실내공기질 측정결과는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